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34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김형규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의 2019. 2. 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21,881,2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81,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의 2019. 2. 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2019. 2. 8.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C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89835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와 C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와 C은 각 원고에게 14,25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C은 2019.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9. 2. 19.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피고가 소유하도록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C의 형으로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C은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무자력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C이 무자력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호증의 1, 을 8, 9, 11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제외하고도 양주시 F빌라 G호의 소유자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020. 11. 27.까지 위 F빌라 G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당시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달리 C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당시 C이 채무초과로 무자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이 E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1,7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은 사실상 강제집행이 곤란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은 채무자인 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에 판단

나아가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은 망인의 사망일에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은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9. 3. 28.경이었던 점,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0. 2.경에 작성된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각서(을 1호증)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상속채무가 허위 채무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다툼 점(갑 15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그것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H 임야 112㎡

2. 서울특별시 은평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51.84㎡

지1층 13.5㎡

1층 55.44㎡

2층 55.44㎡

3층 55.44㎡

옥탑1층 8.28㎡(연면적제외) -끝-

